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 2019. 8. 1.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제 목 : 7월 선고 즉시보도사건 외 보도자료

---

우리 재판소에서 2019. 7. 25.(목)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 7. 25.(목) 14:00 ~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5건. 끝.

# 보 도 자 료

##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2018헌가7 형법 제321조에 대한 위헌제청;  
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 [ 선 고 ]

---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람의 신체, 주거, 자동차 등을 수색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21조 중 ‘주거’ 및 ‘자동차’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 사건개요

- 2018헌가7 사건의 당해사건 피고인은 2017. 11. 17.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 작은방, 거실 등에 들어가 서랍과 장롱을 뒤져 물건을 꺼내어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계속 중인 2018. 4. 6. 형법 제321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8헌바228 사건의 청구인은 2017. 6. 22.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를 뒤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2017. 11. 8. 법원에서 자동차수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8. 2. 7.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3. 2. 형법 제32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5. 11. 상고와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8.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1조 중 ‘주거’ 및 ‘자동차’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결정주문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1조 중 ‘주거’ 및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이유의 요지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영장주의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의미를 가지는 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보호법익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기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거, 자동차와 같은 사적 공간에 대한 수색행위는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형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수색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 불쾌감, 저항감은 어느 행위태양에 의하더라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수색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형벌체계의 균형성 상실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나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와 달리 심판대상조항의 ‘수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조사행위로서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므로 피해자는 더 큰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적 영역 또한 더 깊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와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및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인다.
- 절도의 고의로 타인의 주거, 자동차 등을 수색한 경우, 절도의 고의 없이 수색행위만을 한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과는 달리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형벌체계의 균형성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헌재 2019. 2. 28. 2017헌가33등 참조),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절도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령 절도죄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언제나 주

거, 자동차에 대한 수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침해보다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에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에는 징역형만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와 비교할 때 죄질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으로만 의율되고 있어 형벌체계상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보호법익은 자동차 등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심판대상조항과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전혀 달라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보 도 자 료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 사건**

**[2017헌바513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 선 고 ]

---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중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치료 효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발명특허를 받고 2015. 9. 15. 최종 권리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7. 9. 15. 약식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8.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1심 소송 계속 중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8. 판결 선고와 함께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7.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중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금지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 □ 결정주문

-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중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금지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극
-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하여 광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받은 효과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하여 그 광고는 금지된다.
-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7헌마108 결정과 2004. 9. 23. 2003헌바6 결정에서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위 선례의 판단에 더하여,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대상의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허의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다른 형태로 특허권을 향유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특허권자는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그 기능을 광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금지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극**

- 이 사건 금지조항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과는 무관하게,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식품과 그러한 효능이 없는 식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를 동일하게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식품학·영양학 문헌 광고 등에 해당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면 이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므로, 일정한 식품학·영양학 문헌 광고 등과 특허 광고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처벌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극**

- 이 사건 처벌조항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는 모두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불

법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벌조항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 국민 건강에 대한 간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광고행위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을 통하여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하여 두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2000. 3. 30. 97헌마108 결정, 2004. 9. 23. 2003헌바6 결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에 관하여 특허받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처벌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발명의 보호·장려, 산업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과 그 입법목적은 달리하므로,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동등한 정도로 사람에게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받은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하에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식품위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 보 도 자 료

##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

### [ 선 고 ]

---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선고하였다. [기각]

---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위 제10조의4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중 제2호 나목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호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결정주문

1.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4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유의 요지

###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부칙조항은 기존에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고, 졸업하지 않은 사범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 그렇다면 현재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과의 법적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2.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에 관한 판단

-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곧바로 교원임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폭력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규정한 일정한 성범죄를 범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서의 취임이 제한될 뿐이고, 기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직취임에의 기회까지 영구히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덧붙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일정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 또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벌금형의 정도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일정한 성범죄 등을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을 통하여 미성년자 또는 성인에 대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자가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성범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 보 도 자 료

##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사건

[2017헌마323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제외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순직군인 등의 가족과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기각]

## □ 사건개요

- 청구인의 형은 현역으로 입영하여 복무하던 중 사망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사망군인으로 결정된 자이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서는 가족 중에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은 제외하고 있다.
- 이에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④ 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2.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유의 요지

## ● 평등권 침해 여부 - 소극

- 가족 중에 순직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병역감경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순직자의 가족에게 똑같은 위험성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둬진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순직군인 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순직한 자로서,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사망군인에 비하여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고 직접적이다. 따라서 순직군인 등에 대하여는 재해사망군인과 구별되는,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고, 이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는 그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병역감경제도 역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 특정인의 병역감경은 그의 병역부담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병역감경 대상자를 설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의 필요성은 순직군인 등의 가족이나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이나 다르지 않다.
- 군대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군대에 상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그럼에도 순직군인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은 가족에게 원래의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둬진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
- 병역감경제도 자체는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가(家)의 영속성을 위하여 도입

되었고, 그 동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을 불문하고 병역감경을 인정하여 왔다.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에 따라 병역감경 여부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 순직군인 등의 가족과 재해 사망군인의 가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보 도 자 료

##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2017헌마1038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2017헌마1180(병합)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 5 등 위헌확인]

---

### [ 선 고 ]

---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교육부로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주장을 경청하여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보충의견이 있다. [기각]

---

##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제51조에 따라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 청구인 염○○은 2017. 9. 15.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 제15조의2 제1항, 별표 5, 별표 6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2017헌마1038), 청구인 강○○ 외 122명은 2017. 10. 23. 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5, 별표 6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7헌마1180).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판대상조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별표 5, 별표 6은 [별지]와 같다.

## □ 결정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이유의 요지

### 1.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그 공공성이 강조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 사립유치원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 저하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및 그에 대한 신뢰는 나빠지고 나아가 국가의 교육재정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 비록 심판대상조항의 사립유치원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목들(유치원 설립을 위한 차입금 및 상환금,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수익배당, 통학 및 업무용 차량 이외의 설립자 개인 차량의 유류대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2. 재산권 제한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교사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자기 자신에게 교지·교사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유아교육법상 요구되는 유치원설립기준의 충족을 위해 스스로 교지·교사를 제공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별도의 재산권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 3.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 사립유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점에서 개인병원과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사립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사립유치원 역시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 ▣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

- 원칙적으로 유아교육의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유치원의 공통과정은 무상교육의 대상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도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실제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집행 등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한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사태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이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나아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과도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희망하는 경우 유아들의 학습권 피해와 설립·경영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폐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정의 의의

- 심판대상조항은 유치원에 적용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 결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법률상 ‘학교’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 규제로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별지]

별표 5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 제1항 단서 관련)

관	항	목	세부 내역
1.	보조금 및 지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
	1.	공통과정지원금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지원금 (학부모 등이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공통과정지원금
	2.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 및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1.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교원 급여 등 인건비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정보조금
	4.	자본 보조금	교사(校舍) 등 시설·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정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급식비·간식비 보조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정보조금	
2. 수익자부담수입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1. 교육비	
	1. 입학금	
	2. 일반 교육과정비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학부모 등이 공통과정지원금을 받아 납입한 금액은 공통과정지원금으로 처리
	2. 방과후과정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방과후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비용은 방과후 특성화비로 처리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급식비·간식비	
	1.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의 급식·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이용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
3. 설치·경영자이전수입		설치·경영자가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 ※ 설치·경영자가 대출을 받아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4. 차입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차입금		
1. 단기차입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	
2.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외의 차입금	
5.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에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6. 잡수입금		
1. 잡수입금		
1. 이자수입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2. 행정활동수입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 수입 등 행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7. 기부·후원금수입	기부 또는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8. 지연수납수입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었어야 하나 이전·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납부된 수입	
1. 지연수납수입		
1. 지연수납수입		
9. 전년도이월금		
1. 전년도이월금		
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금액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전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	
3.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비고

1.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항·목에 따른다.

[별표 6]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 제1항 단서 관련)

관	항	목	세부 내역
1.	인건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1.	교원인건비	정규직 교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직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	직원인건비	정규직 직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3.	그 밖의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조·대체교사 보수 및 일용직 급여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2.	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인쇄비, 교육용도서 외 일반도서 구입비, 차량 정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임차료, 대관료 및 비품대여료 등 유치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 통학차량 정비·유지비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전기·전화요금, 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안전공제회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직원 건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성격의 경비
	3. 연료비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료 및 차량 유류대 등 건물 난방 및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 통학차량 유류대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4. 여비	출장에 따른 소요 여비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2.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유치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
	3. 일반교육활동비	유치원 일반 교육활동 소요 경비
	1. 일반교육활동비	
	1. 교사연수·연구비	교직원 연수비 및 연구비
	2. 교재·교구구입비	교육 기자재, 교육용도서 등 구입 및 제작 소요 경비
	3. 행사비	원아 교육과 직접 관련된 각종 행사 소요 경비
	4. 장학금	원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5. 복리비	원아건강검진비 등 원아 건강 및 안전 관련 소요 경비
	6.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시간 내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을 위한 소요 경비
	4. 선택적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한 소요 경비
	2. 그 밖의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 정비·유지비 및 유류대 등 통학차량 이용을 위한 소요 경비
	3.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한 소요 경비
	4.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 소요 경비
	5.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수익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활동 소요 경비
	5. 적립금	건축적립금 및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 한 적립금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로 처리
	1. 적립금	
	1. 적립금	
	6. 상환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학교회계로 이 전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1. 상환금	
	1. 단기차입상환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장기차입상환금	단기차입상환금 외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7. 반환금	
	1. 반환금	
	1. 보조금반환금	보조금 미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2. 수익자반환금	수익자부담금 미사용에 따른 반환금
	8. 시설·설비비	
	1. 시설비	
	1. 신·증축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 경비
	2. 유지비	시설 유지, 수선 및 개·보수 소요 경비
	2. 설비·비품비	
	1. 취득비	설비 설치비, 비품 구입비, 차량 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등 설비나 비품 취득 소요 경비

	2. 유지비	설비, 장비 및 비품의 정비·유지 비용 ※ 차량 정비·유지 비용은 차량 성격에 따라 수용비 또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9. 지연지출금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지출되었어야 하나 지출되지 않았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비 등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0. 잡지출		원 단위 절사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성격의 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11. 예비비		재해·재난 관련 비용 등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1. 예비비	
	1. 예비비	

비고

1.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항·목에 따른다.